

【노인인권보호지침 및 노인학대 예방정보 안내문】

시설생활노인 인권보호지침

이 지침은 노인복지시설(노인주거복지시설, 노인의료복지시설, 소규모요양시설, 노인공동생활시설을 말함)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,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을 제시함으로써, 시설 생활노인들이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.

시설 생활노인 권리선언

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.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,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.

-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, 차별, 착취, 학대,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
-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(care)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
-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
- 시설 내·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
-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
- 우편,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
- 정치적, 문화적,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
-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

-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
-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,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
- 시설 입·퇴소, 일상생활, 서비스 이용,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

시설 생활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

시설운영자, 종사자, 동료 생활노인, 가족, 지역사회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'시설 생활노인의 권리 선언'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,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.

- 1)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
- 2)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
- 3)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
- 4)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
- 5)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
- 6)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
- 7) 정치, 문화,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
- 8)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
- 9)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
- 10)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
- 11)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

[노인학대-폭력에 관한 예방 및 대응방법]

노인학대.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.

노인학대란?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, 정신적, 정서적,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. <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>

1) 노인학대 유형

 신체적 학대 신체적 손상, 고통,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• 위축감, 두려움 및 불안증세가 심함 • 목인 흔적 또는 설명할 수 없는 상처 및 부상이 보임 • 영양부족 및 질병과 관련 없는 탈수 상태 또는 갑작스러운 체중감소	 정서적 학대 비난, 모욕, 위협, 협박 등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• 무반응 또는 무표정 및 우는 모습 • 흥분, 극단적인 행동 또는 히스테리를 부림 •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불안한 모습으로 눈치를 봄	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 등 강제적 성적 행위 • 신체의 주요 부분을 노출시킴 • 겹을 때 혹은 입을 때의 어려움 • 성병에 걸렸거나 속옷이 찢어짐
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(反)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 •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함 • 노인이 빌려준 돈 또는 물건을 받지 못함 • 귀중품이 없어지거나 은행계좌의 부적절한 거래가 있음	 방임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(노인 스스로 최소한의 자기보호를 포기하는 자기방임 포함) • 대소변 냄새, 땀, 염증, 욕창 등이 발생됨 • 의복 및 이불 등의 빨래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는 주거 환경 • 노인 스스로 의식주를 거부하거나 자살을 시도함 (자기방임)	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•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림 • 노인을 시설, 병원 등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음

2) 입소노인 학대 및 폭력에 대한 예방 및 학대사례 처리절차



3)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관한 정보

여러분의 관심으로 노인학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

노인학대 신고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
24시간 상담 **1577-1389** 또는 **129**

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,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(1577-1389), 보건복지부 콜센터(129) 또는 수사기관(112)에 신고하시면 됩니다.

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 (24시간 상담) **1577-1389** 또는 **129**

신고자의 비밀보장 : 신고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합니다(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).